[별지 제4-2호서식] 〈개정 2010.9.3〉 〈개정 2020.5.1.〉

(건물용)

| 열수급계약 해제신청서 | | | | | | | 처리기간<br>14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※사용자번호 | | ※공급열매체 | | ※계약종별 | | ※접수일 | |
| 건물명 | | 건물소재지 | | | | | |
| 소유자 | 주 소 | | | | | | |
| | 성 명 | | 사업자등록번호<br>(주민등록번호) | | 전화번호 | | |
| 사용자<br>(관리인) | 주 소 | | | | | | |
| | 성 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 전화번호 | | |
| 해제사유 | | | | | | | |
| 해제내용 | | | | | | | |
| 해제통지<br>접 수 일 | | | ※해제일 | | | | |

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제합니다.

1.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분배관공사비용,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귀사가 열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.

2.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소유자 (인)

신청자 사용자(관리인) (인)

**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**

주) 공고지역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.